■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개정안 2018.10.9>

관리 번호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소득자 보관용 [V]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지국	한국	거주지국코드	KR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1 /(부2)		
외국법인소속 파견근로자 여부	여1 /(부2)		
국적	한국	국적코드	KR
세대주여부	(세대주1)/세대원2		
연말정산구분	(계속근로1)/중도퇴사2		

징수의무자	1.법인명(상 호)	(주)동양	2.대 표 자(성 명)	정진학
	3.사업자등록번호	116-85-04730	4.주 민 등 록 번 호	110111-0005333
	3-1.사업자단위과세자 여부	여 1 /(부 2)	3-2.종사업자 일련번호	
	5.소 재 지 (주소)	(073-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 (여의도동) 4층		
소득자	6.성 명	나형동	7.주 민 등 록 번 호	810114-1796411
	8.주 소	(033-74)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586-19 (녹번동, 녹번JR아파트) 105동 404호		

I 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16.-1납세조합	합 계
9.근 무 처 명	(주)동양				
10.사업자등록번호	116-85-04730	--	--		
11.근무기간	2018.01.01~2018.12.31	..~..	..~..		
12.감면기간	~	..~..	..~..		
13.급 여	60,215,120				60,215,120
14.상 여	4,485,280				4,485,280
15.인 정 상 여					
15-1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15-2우리사주조합인출금					
15-3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15-4					
16. 계	64,700,400				64,700,400

II 비과세및감면소득명세

18.국외근로	M0X					
18.-1 야간근로수당	O0X					
18.-2 출산·보육수당	Q0X	300,000				300,000
18.-4 연구보조비	H0X					
19. 수련보조수당	Y22					
20. 비과세소득 계		300,000				300,000
20.-1 감면소득 계						

III 세액명세

구 분			78. 소 득 세	79. 지방소득세	80. 농어촌특별세
72. 결 정 세 액			2,513,421	251,342	
기납부세액	73. 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	--		
			--		
	74. 주(현)근무지		3,996,040	399,560	
75. 납 부 특 례 세 액					
76. 차 감 징 수 세 액 (72. - 73. - 74. - 75.)			-1,482,610	-148,210	0

국민연금 : ₩ 2,475,900
건강보험료 : ₩ 2,189,750
고용보험료 : ₩ 420,410
과세제외 : ₩ 3,000,000
공적연금 : ₩ 0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2020년 04월 13일

징수(보고)의무자 (주)동양

세 무 서 장 귀하

Ⅳ 정산명세

종합소득공제		21. 총 급 여 (16., 다만 외국인단일세율 적용시에는 연간 근로소득)				64,700,400
		22. 근로소득공제				12,985,020
		23. 근로소득금액				51,715,380
	기본공제	24. 본 인				1,500,000
		25. 배 우 자				1,500,000
		26. 부양가족(3)명				4,500,000
	추가공제	27. 경로우대(0)명				0
		28. 장 애 인(0)명				0
		29. 부 녀 자				0
		30. 한 부 모 가 족				0
	연금보험료공제	31. 국민연금보험료		대상금액		2,475,900
				공제금액		2,475,900
		32. 공적연금보험료공제	가. 공무원연금	대상금액		0
				공제금액		0
			나. 군인연금	대상금액		0
				공제금액		0
			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대상금액		0
				공제금액		0
			라. 별정우체국연금	대상금액		0
				공제금액		0
	특별소득공제	33. 보험료	가.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대상금액		2,189,750
				공제금액		2,189,750
			나. 고용보험료	대상금액		420,410
				공제금액		420,410
		34. 주택자금	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대출기관		0
				거주자		0
			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미만	0
					15년~29년	0
					30년이상	0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대출	0
					그 밖의 대출	0
				2015년 이후 차입분	15년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대출	814,500
					15년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대출	0
					15년이상 그 밖의 대출	0
					10년~15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대출	0
		35. 기부금(이월분)				0
		36. 계				3,424,660
37. 차감소득금액						38,314,820
그 밖의 소득공제		38. 개인연금저축				0
		39.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0
		40.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가. 청약저축			0
			나. 주택청약종합저축			0
			다. 근로자주택마련저축			0
		41. 투자조합출자 등				0
		42. 신용카드 등 사용액				3,427,524
		43.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0
		44.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0
		45.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0
		46. 그 밖의 소득공제 계				3,427,524
47.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0

48. 종합소득 과세표준					34,887,296
49. 산출세액					4,153,094
세액감면	50. 「소득세법」				0
	51. 「조세특례제한법」(52. 제외)				0
	5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0
	53. 조세조약				0
	54. 세 액 감 면 계				0
세액공제	55. 근로소득				660,000
	56. 자녀	공제대상자녀 (1 명)			150,000
		출산・입양자 (0 명)			0
	연금계좌	57. 과학기술인공제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액	0
		5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액	0
		59. 연금저축		공제대상금액	2,400,000
				세액공제액	288,000
	특별세액공제	60. 보험료	보장성	공제대상금액	1,000,000
				세액공제액	120,000
			장애인전용 보장성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액	0
		61.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2,320,158
				세액공제액	348,023
		62.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491,000
				세액공제액	73,650
		63. 기부금	가.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공제대상금액	0
				10만원 이하 세액공제액	0
				10만원 초과 공제대상금액	0
				10만원 초과 세액공제액	0
			나. 법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액	0
			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액	0
			라. 지정기부금 (종교단체외)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액	0
			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액	0
		64. 계			541,673
		65. 표준세액공제			0
	66. 납세조합공제				0
	67. 주택차입금				0
	68. 외국납부				0
	69. 월세액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액		0
	70. 세 액 공 제 계				1,639,673
71. 결 정 세 액 (49. - 54. - 70.)					**2,513,421**

77. 소득·세액공제 명세[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장애인 해당시 해당 코드기재)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인적공제 항목						자료구분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관계코드	성 명	기본공제		경로우대	출산입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전용보장성	일반	난임	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일반	장애인특수교육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자녀 1 명)		5		0	0	국세청			6,098,418	0	4,261,170	0	0	491,000	0
		0	0	0	0	기타	2,189,750	420,410	0	0	0	0	0	0	0
0	나형동	O				국세청			2,775,198	0	57,800	0	0	0	0
1	근로자본					기타	2,189,750	420,410	0	0	0	0	0	0	0
1	강영숙	O				국세청			505,220	0	635,460	0	0	0	0
1	541014-2796316					기타	0	0	0	0	0	0	0	0	0
1	나문영	O				국세청			1,876,120	0	1,044,050	0	0	0	0
1	520809-1796421					기타	0	0	0	0	0	0	0	0	0
3	임혜연	O				국세청			501,240	0	2,143,170	0	0	0	0
1	840413-2042325					기타	0	0	0	0	0	0	0	0	0
4	나태양	O				국세청			440,640	0	380,690	0	0	491,000	0
1	150120-3036214					기타	0	0	0	0	0	0	0	0	0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자료구분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					기부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도서공연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국세청	5,408,148	22,580,123	7,072,723	12,600	41,720	660,750	0
기타	0		0	0	0	0	0
국세청	881,410	2,90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국세청	7,889,630	15,650	2,129,300	0	0	0	0
기타	0		0	0	0	0	0
국세청	5,438,987	429,700	7,672,225	0	177,890	179,000	0
기타	0		0	0	0	0	0
국세청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작 성 방 법

「소득세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조합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 사용하며, 이 경우 "⑨ 근무처명"란 및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실제 근무처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근로소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KR, 미국:US

2.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외국인"란에 "외국인 9"를 선택하고 "국적 및 국적코드"란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해당 근로소득자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외국인단일세율 적용"란에 여1을 선택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단위 과세자에 해당할 경우 ③-1에서 여1을 선택하고, ③-2에 소득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종사업장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4.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Ⅰ. 근무처별 소득명세"란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항목별로 적고,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에는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 및 감면대상을 해당 코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적을 항목이 많은 경우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의 "(20) 비과세소득 계"란 및 "(20)-1 감면세액 계"란에 총액만 적고, "Ⅱ.비과세 소득"란을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6.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과 그 외 근로소득을 더하여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16)-1 납세조합"란에 각각 근로소득납세조합과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적고,「소득세법」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공제금액을 "(67) 납세조합공제"란에 적습니다. 합병, 기업형태 변경 등으로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과 기업형태 변경 전의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종(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또한, 동일회사 내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곳에서 전입 등을 한 경우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전입하기 전 지점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종(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7. "(21) 총급여"란에는 "(16)계"란의 금액을 적되, 외국인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이 서식에서 "조특법"이라 합니다)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16)계"의 금액과 비과세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8. "종합소득 특별소득공제((33)~(35))"란과 "그 밖의 소득공제((38)~(46))"란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적습니다 (소득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9. "연금계좌((57)~(59))"란과 "특별세액공제((60)~(65))"란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대상금액 및 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10. (48)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은 (34) 주택자금공제(㉮+㉯), (39)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40)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41)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는 제외), (42)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액, (43)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액, (46)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액 전체를 합한 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습니다.

작 성 방 법

11. (49)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37) 차감소득금액에서 (47) 그 밖의 소득공제 계를 차감하고 (48)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2. (75) 납부특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므로써 얻는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3. 파견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경우 기납부세액은 해당 파견근로자 개인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파견근로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액(2018. 6. 30.이전 17%, 2018. 7. 1.이후 19%)에 총 파견근로자의 결정세액 합계에 대한 각 파견근로자별 결정세액의 비율을 곱하여 적습니다.

14.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만 버리며, (77) 차감징수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15. "(77) 소득·세액공제 명세"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관계코드란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득세법 §50 ① 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 ① 3 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 ① 3 가)	2
배우자 (소득세법 §50 ① 2)	3	직계비속(자녀·입양자) (소득세법 §50 ① 3 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득세법 §50 ① 3 나)	5
형제자매 (소득세법 §50 ① 3 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득세법 §50 ① 3 라)	7	위탁아동 (소득세법 §50 ① 3 마)	8

*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는 포함하되 코드 4는 제외합니다.
※ 관계코드 4~6는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나. 내·외국인란: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적습니다.

다. 인적공제항목란: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라. 국세청 자료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각 소득·세액공제 항목의 금액 중 소득·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기타 자료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증명서류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예를 들면,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항목"의 "기타"란에 적습니다).

바.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란: 소득·세액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적습니다(소득·세액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을 공제항목별로 구분된 범위 안에 적습니다).

16. 해당 근로소득자가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해당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7. 해당 근로소득자가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퇴직연금·연금저축·기부금 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해당 명세서(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8. (34) 주택자금공제의 15년 이상 29년 이하, 30년 이상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이 서식에서 "소득령"이라 합니다) 제112조제10항제5호가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19. (77)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 시 인적공제 항목 중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다음의 코드를 해당 항목에 적습니다.

구 분	관계코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2
그 밖에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	3

20. 전통시장 사용액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 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선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1. 도서·공연 사용분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되 도서공연 사용분이 전통시장 사용분에도 해당할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공제 받습니다,

22.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도서·공연 사용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비과세 및 감면 소득 코드

구분	법조문	코드	기재란	비과세항목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비과세	소득세법§12 3 가	A01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X
	소득세법§12 3 나	B01		법률에 따라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X
	소득세법§12 3 다	C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X
	소득세법§12 3 라	D01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X
	소득세법§12 3 마	E01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X
		E02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X
	소득세법§12 3 바	E10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 및 사망일시금	X
	소득세법§12 3 사	F01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X
	소득세법§12 3 아	G01	***18.***-5	비과세 학자금(소득령§ 11)	O
	소득세법§12 3 자	H01	***18.***-9	소득령§12 1(법령・조례에 따른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O
		H02		소득령§12 2 ~ 3(일직료・숙직료 등)	X
		H03		소득령§12 3(자가운전보조금)	X
		H04		소득령§12 4, 8(법령에 따라 착용하는 제복 등)	X
		H05	***18.***-18	소득령§12 9 ~ 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O
		H06	***18.***-4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O
		H07	***18.***-4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고등교육법」	O
		H08	***18.***-4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O
		H09	***18.***-4	소득령§12 12 나(연구보조비 등)	O
		H10	***18.***-4	소득령§12 12 다(연구보조비 등)	O
		H14	***18.***-22	소득령§12 13 가(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영유아보육법 시행령」	O
		H15	***18.***-23	소득령§12 13 나(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유아교육법 시행령」	O
		H11	***18.***-6	소득령§12 14 (취재수당)	O
		H12	***18.***-7	소득령§12 15 (벽지수당)	O
		H13	***18.***-8	소득령§12 16 (천재・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O
		H16	***18.***-24	소득령§12 17 (정부・공공기관 중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전지원금)	O
		H17	***18.***-30	소득령§12 18(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O
	소득세법§12 3 차	I01	***18.***-19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O
	소득세법§12 3 카	J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X
	소득세법§12 3 타	J10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X
	소득세법§12 3 파	K01	***18.***-10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O
	소득세법§12 3 하	L01		종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	X
	소득세법§12 3 거	M01	***18.***	소득령§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100만원	O
		M02	***18.***	소득령§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300만원	O
		M03	***18.***	소득령§16①2(국외근로)	O
	소득세법§12 3 너	N01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X
	소득세법§12 3 더	O01	***18.***-1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O
	소득세법§12 3 러	P01		비과세 식사대(월 10만원 이하)	X
		P02		현물 급식	X
	소득세법§12 3 머	Q01	***18.***-2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월 10만원 이내)	O
	소득세법§12 3 버	R01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X
	소득세법§12 3 서	R10	***18.***-21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O
	소득세법§12 3 어	R11	***18.***-29	소득령 17의3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	O
	구 조특법§ 15	S01	***18.***-11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O
	조특법§16의2	U01	***18.***-31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O
	조특법§ 88의4⑥	Y02	***18.***-14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O
		Y03	***18.***-15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O
		Y04	***18.***-16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100%)	O
	소득세법§12 3 자	Y22	***19.***	소득령§12 13 다(전공의 수련보조수당)	O
감면	조특법§18	T01	***18.***-1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O
	조특법§30	T10	***18.***-25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100%)	O
		T11	***18.***-26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50%)	O
		T12	***18.***-27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70%)	O
		T13	***18.***-32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90%)	O
	조세조약	T20	***18.***-28	조세조약상 소득세 면제(교사・교수)	O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 호	(주)동양	② 사업자등록번호	1 1 6 8 5 0 4 7 3 0
	③ 성 명	나형동	④ 주민등록번호	8 1 0 1 1 4 - 1 7 9 6 4 1 1
	⑤ 주 소	(033-74)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586-19 (녹번동, 녹번JR아파트) 105동 404호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000-000)		
		(전화번호 :)		

2.연금계좌 세액공제

1)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세액 공제금액
연금저축	삼성화재해상보험 (주)	51201541450000	2,400,000	288,000